

## 영어인증제 운영규정

제 정	:	2020. 2. 17.
개 정	:	2021. 3. 24.
개 정	:	2024. 1. 12.
개 정	:	2024. 6.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사내규 제70조 제1항에 따라 영어인증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영어인증제란 영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영어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더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① 모든 학생은 재학 중 별표1 “영어인증 기준”에 따라 영어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0.>

② 이 규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0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영어인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 6. 20.>

**제5조(영어인증)** ① 영어인증은 영어인증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공인인증점수 기준을 충족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0.>

② 공인인증점수는 공인시험성적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공인시험성적표는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하며, 입학 전 취득 성적도 인정한다.

④ 각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유급생은 학기 또는 계절학기를 통하여 재수강하거나 각 단계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대체인증)** ① 별표1 “영어인증 기준”에 따라 공인인증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영어인증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0.>

② 영어권 해외대학에서 2년(4학기) 수학한 복수학위생은 영어인증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4., 2024. 6. 20.>

**제7조(인증절차)** ① 제6조에 따라 영어인증으로 대체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종강 일까지 영어인증 대체신청원(별지서식1)을 제8조에 명시된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지원처로 제출한다. <개정 2024. 6. 20.>

② 삭제 <2024. 6. 20.>

③ 교학지원처는 영어인증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개정 2024. 6. 20.>

**제8조(증빙서류)** 대체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 분야별 증빙서류를 아래 각 호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 ① 영어 성적을 통한 인증 : 영어 공인시험성적표, 영어권 해외대학 복수학위생의 경우 해당 대학 성적표 등 <개정 2021. 3. 24.>
- ② 증빙서류 : 성적표 원본

**제9조(최종평가)** ① 삭제 <2024. 6. 20.>

- ② 삭제 <2024. 6. 20.>
- ③ 삭제 <2024. 6. 20.>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제정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 ①항 별표1 “영어인증 기준”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24. 6. 20.>

## 영어인증 기준

구분	1~4학년		
금강PRIDE 교양	영어인증1 Pass	영어인증2 Pass	영어인증3 Pass
공인 어학시험 (4종 택1)	토익 500점	토익 600점	토익 700점
	토익스피킹 IM 1레벨	토익스피킹 IM 2레벨	토익스피킹 IM 3레벨
	OPIc IM 1레벨	OPIc IM 2레벨	OPIc IM 3레벨
	토플 60점	토플 70점	토플 80점
영어권 복수학위	복수학위 수학 증빙제출 시 인정 (3학기 이상)		
<p>※ 20~22학번 학생으로 기존 영어인증제(브론즈, 실버, 골드단계)중 골드단계 이상 이수 학생은 영어인증 완료로 인정</p> <p>- 실버단계 이수자는 영어인증2(교양)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 &lt;개정 2024.6.20&gt;</p> <p>※ 어학시험점수와 교과목 수강을 혼재하여 이수 가능</p> <p>- 교양 교과목 트랙은 학기 당 1개 교과목 수강이 원칙이나, 7학기 이상 재학생은 담당교수 허락 시 예외적으로 영어인증 과목을 최대 2개까지 동일학기에 수강 가능</p>			

(별지서식1) &lt;개정 2024. 6. 20.&gt;

## 영어인증 대체신청원

소 속 및 연락처	학 부		전 공	
	학 번		학 년	학 기
	성 명		연락처	
인증분야	<input type="checkbox"/> 영어인증1(교양필수)	<input type="checkbox"/> 영어인증2(교양필수)	<input type="checkbox"/> 영어인증3(교양필수)	
[공인어학성적 현황]				
공인어학성적 구분		점수		응시일자
<input type="checkbox"/> 토익	<input type="checkbox"/> 500점	<input type="checkbox"/> 600점	<input type="checkbox"/> 700점	
<input type="checkbox"/> 토익스피킹	<input type="checkbox"/> IM 1레벨	<input type="checkbox"/> IM 2레벨	<input type="checkbox"/> IM 3레벨	
<input type="checkbox"/> 오픽	<input type="checkbox"/> IM 1레벨	<input type="checkbox"/> IM 2레벨	<input type="checkbox"/> IM 3레벨	
<input type="checkbox"/> 토플	<input type="checkbox"/> 60점	<input type="checkbox"/> 70점	<input type="checkbox"/> 80점	
영어권 해외대학 복수학위생	<input type="checkbox"/> 수학기간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영어 인증제 신청 처리	성명, 학번, 학부, 전공, 전화번호, 인증분야, 성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본인은 학사내규 제70조 제2항 및 영어인증제 운영규정,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졸업자격 취득을 위하여 영어인증 대체신청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교학지원처장 귀하				

※ 참고사항

- 제출 시 증빙서류 첨부 (영어 공인시험성적표, 복수학위대학 성적표)
- 제출장소 : 교학지원처